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손해배상 요건 명확화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8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기구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보험의 배상 요건을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에서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일어난 사고”로 변경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 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u>어린이놀이 시설의 사고</u> 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등) ① ----- ----- <u>어린이놀이 시설에서 일어난</u> ----- ----- ----- ----- ----- --.
<신설>	② 관리주체는 <u>어린이놀이 시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 내</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4항----- ----- -----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의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함¹⁾.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주요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정하는 장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총 83,763개소(2025. 3. 31. 기준)

* 주택단지·도시공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학원·의료기관·식품접객업소·놀이제공영업소·대규모점포·아동복지시설·목욕장업소·도로휴게시설·주상복합·공공도서관·종교시설·박물관·하천·자연휴양림·야영장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산업부 소관)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놀이기구 13종 43개 유형의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시소, 암벽오르기 등)

- (장소별) 주택단지 44,921개소(53.6%), 도시공원 12,125개소(14.5%), 유치원 7,353개소(8.8%), 어린이집 7,352개소(8.8%), 학교 6,876개소(8.2%) 등

(단위: 개소)

총계: 83,763 [지자체 소관: 69,386(82.8%), 교육청 소관: 14,377(17.2%)]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44,921	12,125	7,352	6,876
아동복지시설	식품접객업소	놀이제공영업소	유치원
404	1,319	1,682	7,353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상복합	도로휴게시설	학원
119	325	36	111
공공도서관	종교시설	박물관	유아교육진흥원
49	375	94	37
하천 / 자연휴양림	야영장 / 대규모점포	목욕장업소	의료기관
81 / 135	178 / 83	73	35

*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 그네 >	< 미끄럼틀(독립형) >	< 정글짐 >	< 공중놀이기구 >
			
< 흔들놀이기구(시소) >	< 흔들놀이기구(A형) >	< 오르는기구(평행봉) >	< 오르는기구(늑철) >
			
< 오르는기구(철봉) >	< 오르는기구(암벽) >	< 회전놀이기구 >	< 건너는 기구(구름다리) >
			
< 조합놀이대(일반형) >	< 조합놀이대(물이용형) >	< 스페이스네트 >	< 폐쇄형놀이기구(살네) >

*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²⁾와 설치·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³⁾의 보험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⁴⁾.

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 중에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 소홀, 검사·점검 미흡 등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고의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어린이놀이기구 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개요]

□ 보험가입 시기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기구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정기검사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이용금지 조치 등 어린이놀이기구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험의 보상한도액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 (사망) 1인당 1억원 한도 내 실손해액(장래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 보상
- (부상) 부상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1급 2천만원 ~ 14급 80만원)로 지급
- (후유장해)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1급 1억원 ~ 14급 630만원)로 지급
- (재산상 손해) 1사고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 배상

□ 미 가입 시 조치 :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관리감독기관이 부과)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이 현행법의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자체에 안전상의 문제가

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문언을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일어난 사고”로 변경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 이용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목적⁵⁾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보험 가입 사실을 게시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로 인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에게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당 보험의 가입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5)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기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⁶⁾, 이와 유사하게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험 가입 사실을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문언의 명확성 및 과태료 부과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첫째, 개정안의 문언과 같이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일어난 사고”로 규정한다면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 경우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기관에 과도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표현⁷⁾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6)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 등)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기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각됨.

둘째, 보험가입 사실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 규정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이미 현행법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으로 규정⁸⁾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사실 미게시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다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법이 관리주체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⁹⁾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행정안전부는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험의 가입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 가입 사실의 게시 의무 위반 시 100만원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과 같이 어린이놀이기구에 손해
배상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¹⁰⁾를 의무화할 경우, 2026년
66억 2,800만원, 2030년 1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73억
4,100만원(연평균 14억 6,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¹¹⁾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9

10) 국가 등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 1개소당 2개의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11)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어린이놀이기구 보험가입 사실 게시 (안 제21조제2항 신설)	6,628	169	177	181	186	7,341	1,468